

청주교육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22. 8. 12. 규칙 제161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 학부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내용의 다양성 증진 및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원격수업이라 함은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) ① 본 규정은 교육과정으로 승인된 교과목 중 해당 학기 교수 및 강사(이하 ‘교수자’ 라 한다)의 원격수업 신청 강좌에 한하여 적용한다.

② 공휴일 및 교육실습 등 학사일정에 의한 보강 또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의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원격수업에 대한 학사관리는 교무운영규정과 온라인 보강 운영 지침의 기준을 적용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해 ‘원격교육관리위원회’ 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, 학생처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이외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교원위원과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품질 관리 등 질 제고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원격수업 관련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원격수업 강좌 개설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8조(개설·운영)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수자가 해당 학기 수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

수업 강좌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[별지 제1호서식]의 원격수업 운영 신청서를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 심의·의결로 강좌를 개설한다.

제9조(수업의 형태와 관리) ① 원격수업은 동영상 강의나 실시간 화상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사용하지 않는 원격수업도 인정하되, 이 경우 교수자는 수업 진행 사실과 출결 사항을 따로 증빙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업의 구성과 운영) ① 원격수업은 강의, 실기시험 등 교수자가 주도하는 수업 운영 시간을 1차시 기준으로 25분 내외로 구성하고, 질의·응답, 과제 수행 및 발표, 토의·토론,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 활동, 실기연습 등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.

제11조(수강자격) 본교 정규학기에 개설한 원격수업의 수강대상자는 학부 재학생으로 제한한다.

제12조(원격수업의 출석 및 평가, 이수) ① 교수자는 원격수업의 운영 시기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교수자는 학생의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원격수업의 학습 진행률이 80% 이상 100% 미만은 지각, 80% 미만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이를 학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원격수업의 경우에도 시험은 대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평가 및 이수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④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하는 것은 불가하다.

⑤ 총장은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강의 개선 등을 위하여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 평가를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원격교육지원센터) 위원회 운영 지원,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, 원격수업 활용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며, 그 업무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

제14조(수업 콘텐츠 제작) ① 수업 콘텐츠는 원격수업 담당 교수자가 제작하여야 한다.

② 수업 콘텐츠를 기존 동영상(다른 교수자의 동영상 강의, 방송, 영화 등)만으로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개발된 수업 콘텐츠는 서로 다른 교과목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.

제15조(수업 콘텐츠 저작권) ① 수업 콘텐츠의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,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책임 소재에 따라 개발 교수자 또는 학생에게 있다.

② 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개발 교수자에게 귀속되나 사용권은 본교와 공동으로 갖는다.

③ 개발된 수업 콘텐츠를 본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수자가 이용하도록 허락할 경우 또는 개발한 교수자가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

교무처와 개발 교수자 간 상호 승인이 있어야 한다.

④ 교수자가 개발한 자료를 학생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6조(수업시수 인정 및 강사료 지급 기준) 원격수업의 수업시수는 모두 인정하고 일반 수업의 강사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다.

제17조(개인정보보호) 원격수업을 위한 대학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
부 칙<제1613호, 2022. 8. 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.

